

부가가치세분야 7



글/ 임현석 세무사

32.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대금 결재,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1) 사업개요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장려시책에 부응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대행업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임. 카드회사와 사업자간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표관리에서부터 정산 업무 대행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카드사, 정부 및 회사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2) 회사의 사업구조

가. 사업의 종류 : 도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부가통신업, 카드가맹점대행업을 영위함.

나. 매출의 구성 : 부가통신 서비스 수수료, 카드가맹점 대행 서비스 수수료.

Q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의 면제여부.

A 여신전문금융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

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재,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3. 면세하는 농·임산물 중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Q 〈사실관계〉

농·임산물, 건강식품을 도소매 소포장하여 각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영지버섯, 동풍하초, 대추, 표고버섯, 수삼 등 농산물을 등바구니 또는 나무상자에 한 품목 또는 두 품목을 함께 담아 판매할 경우 이것을 과세품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농산물로 보아 비과세상품으로 해야 하는지에 여부.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농산물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4. 지입운수회사가 개인차주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용역공급 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Q <사실관계>

지입운수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체로 개인 차주들 사업의 어려움으로 회사의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있는바, 지입료를 카드결제로 원하는 차주들이 많아 실행하고자 하나 당사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마다 하였는데 차주들이 1~2년전의 누적된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을 결제할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지입운수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해 대가의 미수금에 대하여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해 내용이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미수금 결재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5.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

Q <사실관계>

1) 주물제조업을 하는 복식기장 개인사업자로서 외형이 신장되고 사업규모가 커질 것이 예상되어 금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였음.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부가가치세법상 적정가격에 특수관계 있는 당해 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 본 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어 감가

상각의 제규정 적용을 받고 있으며, 몇 년 동안 결산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실지 가액에 비해서 과대계상되어 있는 실정임.

A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를 말함)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

36. 인도받은 원자재를 제조 임가공시 당해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Q 신발 제조판매 회사로서 특수생산제품 등에 대하여는 가공하청을 주어 납품받고 있는 바 이 때, 그 원재료를 당사가 구입하여 제공하고 그 자재비대를 차감한 금액으로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원재료 제공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A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